

###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한층 강화된다

건축물·설비의 노후 석면 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이 5월 25일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보온재 등의 석면합유자재가 손상·노후화되어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노후 석면자재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석면분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토록 하고 당해 장소에서는 흡연·취식을 금지토록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유해·위험 작업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한편 이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치하고→갖추어 두고", "준수하여야 한다→지켜야 한다" 등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노·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데 특징이 있다. 이 개정안은 6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8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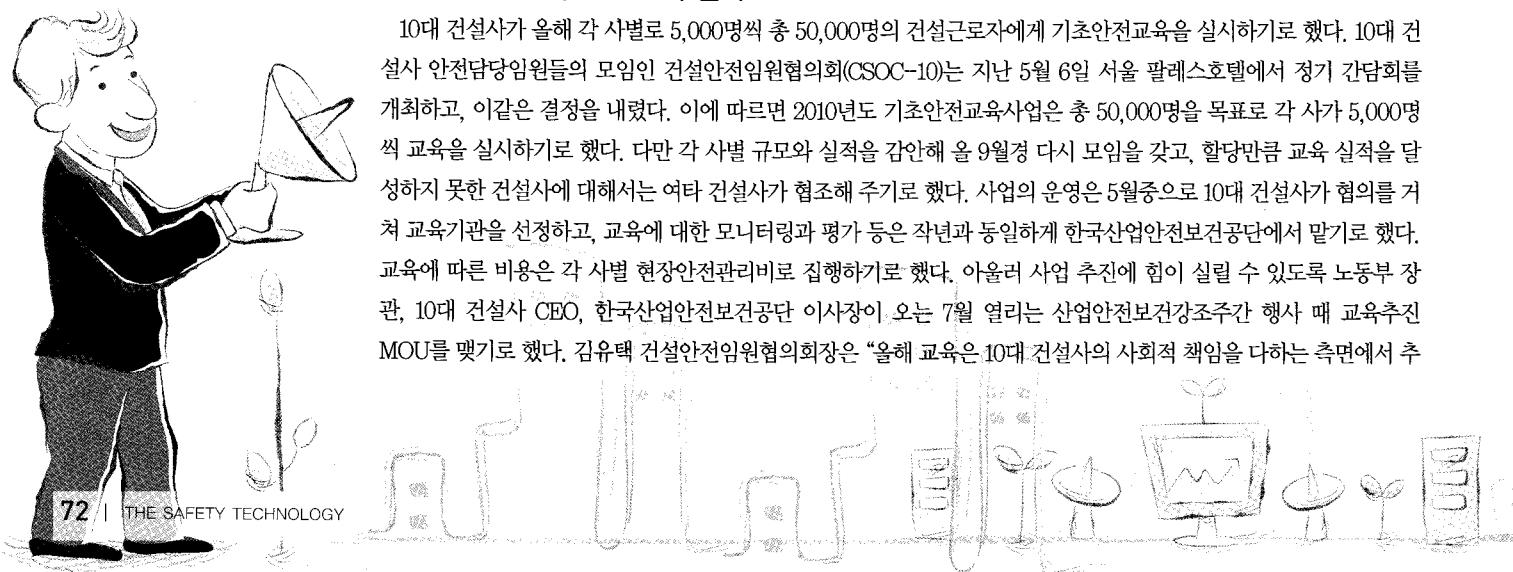
### 1분기 사고성 재해자수 '늘고' 사망자수 '줄어'

올해 1/4분기까지 사고성 재해자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사망자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최근 1/4분기 사고성 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제외)를 집계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자수는 총 21,4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746명)에 비해 1,68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성 사망자는 3월말 현재 3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0명)에 비해 3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를 볼 때 지난해보다 중대재해는 감소한 반면 전체 재해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고성 재해자수를 지난해대비로 볼 때 울산지청이 170명, 구미지청이 47명, 서울강남지청이 26명 줄어드는 등 38개 관서 중 9개 관서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청이 30명, 부천지청이 98명, 서울관악지청이 122명, 광주청이 151명, 수원지청이 153명, 경인청이 175명 늘어나는 등 나머지 29개 관서는 재해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성 사망자는 울산, 서울청, 대전청, 의정부, 서울동부, 수원 등 25개 관서가 감소한 반면, 구미, 서울강남, 포항을 포함해 13개 관서의 경우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재해예방 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반영하겠다"라며 "아울러 민간기관 및 산업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10대 건설사 기초안전교육 실시

10대 건설사가 올해 각 사별로 5,000명씩 총 50,0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10대 건설사 안전담당임원들의 모임인 건설안전임원협의회(CSOC-10)는 지난 5월 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2010년도 기초안전교육사업은 총 50,000명을 목표로 각 사가 5,000명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각 사별 규모와 실적을 감안해 올 9월경 다시 모임을 갖고, 할당만큼 교육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여타 건설사가 협조해 주기로 했다. 사업의 운영은 5월중으로 10대 건설사가 협의를 거쳐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작년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에 따른 비용은 각 사별 현장안전관리비로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 10대 건설사 CE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오는 7월 열리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때 교육추진 MOU를 맺기로 했다. 김유택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은 "올해 교육은 10대 건설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추



진하는 것이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다만 여타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에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원 확대된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5월 3일 2010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은 안전진단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에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70개 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지원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올해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4억 7천만원에서 올해 총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당 지원비용의 최대한도 또한 지난해 ‘소요비용 50%이내·최대 1천만원’에서 올해에는 ‘소요비용 75%이내·최대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학·연구기관 중 공고일 기준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기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165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총 11억 여원을 지원했으며, 그동안 기관 차원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환경의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철로변 타워크레인 작업 반드시 신고해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철로변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철로변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근거조항을 신설해 마련된 것으로, 철도보호지구(철로변으로부터 외곽 30m이내)안에서 신고대상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접수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에게 안전 매뉴얼 배포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 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신고인, 인접역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한 행위제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행위 외로 직전에 철도안전의 지장여부를 반드시 현장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건설공사 안전 품질관리 한층 강화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원의 업무정지 권한과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안전 점검기관 선정 시 발주청 승인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실시 후 발주청 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실시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도록 했다.

또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하여 관리토록 했다. 부실별점의 불합리한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부실별점 산정절차를 단순화하고, 평균부실별점 산정 시 점검한 횟수로 평균하여 반영토록 했다. 또 부실별점 부과 시 관리기관에 5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고,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별점 경감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책임있는 건설공사관리를 위해 감리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책임감리 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 준공검사 등을 추가키로 했으며,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에 민투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권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무재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교육 규제 완화

무재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지난 4월 30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연도에 한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중 이론강의가 가능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해진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http://www.molab.go.kr))의 ‘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